예 산 총 칙

200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214,749,041	6,442,471
일반회계	205,810,468	6,174,314
특별회계	8,938,573	268,157
기타특별회계	8,938,573	268,157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21,475	12,644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464,560	13,937
주차장특별회계	7,468,314	224,049
지하수관리 특별회계	393,613	11,808
기반시설 특별회계	190,611	5,71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831,748 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,600,000 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